	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										처리기간				
		그 현 이 기본에 도착 제되고 이 에 세 역기 현경이									시·군·구 2일				
어 업 의	의 종	류													
어 업 권 자	성 명					주민	주민등록번호								
	주 소		시·도 시]·군·	·군·구 읍·			면·동리·동			번지			
면허번호제		제	호	면허기간			년 월 일				일 ~ 년				
면허면적			ha	어	장위치	,	시·군·구 읍·도				면·동 리·동 번지				
		종투		분	지	정 받	은 관리	승인 변			받은	받은 관리선			
사용하 하는 관	·리선	어 선 번 호			제	ই	제	j	<u>\$</u>	제	j	<u>\$</u>	제		ই
의 내		톤 수													
		ם	} 력												
포획·		의							·						
목적과 사유															
포획·채	취방법								1						
포획·채	취하고	1자 하는 수산			품 종		계							기	타
물의 종	류 및	· 수량			수 량 (]	kg)									
포획·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기간							١	년	월	일	~	Ļ	1	월	일
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4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·채취의 금지해제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 19년월일일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
入 	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
* 어장을 행사계약관리하거나 법인어촌계인 경우에는 어업권													수 수 료		
	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												今 出	Į	음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